

아동기본법안

(이중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8.

발 의 자 : 이중배 · 엄태영 · 김용태
송석준 · 김승수 · 김태호
김태규 · 안철수 · 윤영석
최은석 · 강명구 · 이만희
권영진 · 윤용근 · 서명옥
이진숙 · 김기웅 · 임종득
배준영 · 구자근 · 이학영
황운하 · 이소희 · 송언석
김예지 · 조경태 · 최보운
배현진 · 윤재옥 · 김소희
박대출 의원(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아동 관련 법·제도는 보호·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의 생존권·보호권·발달권·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, 아동 의견 반영, 아동정책영향평가, 아동통합서비스 등을 규정하는 한편, 국가

아동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·구제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(안 제1조부터 제32조까지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45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아동기본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른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가정·사회·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①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된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보장받아야 하며,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,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
③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

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의 수립·시행과 예산의 편성·집행에 있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아동의 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, 안전,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,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권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예산 체계를 구축하고, 그에 필요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

하며,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국민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이 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하고, 아동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아동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호자의 책무)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주의 책무) ① 사업주는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주는 고용한 노동자가 아동의 양육 및 돌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필요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특별보호아동지원) ①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·경제적 이유 등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(이하 “특별보호아동”이라 한다)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아니 되며, 그

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
② 특별보호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포함한다.

1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
2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
3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른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자녀인 아동
4. 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빈곤아동
5.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,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인 아동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속한 아동
7. 그 밖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정책 및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9조(아동권리의 날 및 아동권리주간)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아동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0일을 아동권리의 날로 하고, 11월 20일이 속한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의 날과 아동권리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, 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아동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등

제11조(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·평가
2.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3.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4.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
5. 특별보호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아동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지역별 아동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

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지역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아동정책 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,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아동지원 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) ① 국가는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 및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실시하는 아동지원에 관한 정보가 상호간에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에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간의 아동 지원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제16조(아동 등의 의견 반영) ① 아동은 자신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와 행정절차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수립·시행·평가와 행정절차에 관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의견을 성실하게 고려하여 정책 및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어떠한 조작이나 압박 없이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명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정보와 아동 친화적인 참여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동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아동 본인의 최선의 권익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예산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 및 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

분석하고,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분석 결과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8조(아동정책위원회)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·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3.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4.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5.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·조정에 관한 사항
6.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
7. 아동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·교육부장관·법무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

체육관광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· 보건복지부장관 ·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· 고용노동부장관 · 성평등가족부장관 · 기획예산처장관

2. 경찰청장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
3.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위원
4.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아동대표

④ 위원회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 ·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아동종합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, 언어 및 인지 발달, 정서적 · 신체적 건강, 아동안전, 아동학대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,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·

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종합보고서의 작성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(제4호의 경우 매 3년마다를 말한다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 현황
2.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
3.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
4. 제19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,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아동통합서비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의 보편

적인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·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, 복지, 보호, 교육, 문화,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맞는 아동통합서비스를 발굴하고,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중복 또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통합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아동통합서비스의 대상 범위,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, 제3항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,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
3. 위원회, 그 밖에 아동정책 관련 합의제기구의 운영 지원

4.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
 5. 아동의 권익 및 인권 옹호에 관한 사항과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구제 지원
 6. 관계 법령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·방지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운영
 7.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관련 시설 지원
 8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
 9. 아동 관련 실태조사, 통계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지원
 10.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
 11. 아동 관련 해외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
 12. 「아동복지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후견인 선임 및 법률상담 지원
 13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7항 각호의 업무
 14.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제6항 각호의 업무
 15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-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.
- 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·운영 및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보장원은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-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아동 권리 침해의 예방

제24조(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의 참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정책방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(원가정 양육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출생

전후부터 그가 태어난 가정(이하 이 조에서 “원가정”이라 한다)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신·출생 단계부터 필요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 및 양육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가정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아동이 가정 분리를 겪지 아니하고 원가정에 머무르거나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원하는 체계와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위탁가정, 입양가정,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호·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기준,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및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26조(영유아 조기지원 및 통합적 개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생애 초기 발달 지연, 정서 및 양육 위험, 학대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, 보건소, 교육기관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8조에 따른 중

양장애아동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,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등 관련 정보가 지원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연계·공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발달·정서·학대·양육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, 사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 선별 기준, 정보 연계의 범위, 지원 전담 기관의 운영 등 영유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27조(실종아동의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28조(아동학대의 대응 및 아동사망 검토체계의 수립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사망의 조속한 발견과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, 자살, 외인사 등 아동사망의 원인을 과학적·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동사망 예방 및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, 피해아동의 보호·지원 및 아동사망 검토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4장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

제29조(국가아동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) ①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보장·옹호하고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아동인권위원회(이하 “인권위원회”라 한다)을 둔다.

② 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되,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.

③ 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아동권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.

④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아동의 애로사항 및 그 밖의 건의 사항 접수
2.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
3. 아동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절차에서의 법률대리인 선임 및 조력 지원
4.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발굴,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

⑤ 인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

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 또는 권고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인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,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(아동권리의 침해 신고 및 진정 등) ①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.

② 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쉽고 편리하게 제1항에 따른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진입창구를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제31조(진정의 조사 및 처리) ① 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 처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진정을 관련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송 외에 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49조의2를 준용한다.

제32조(아동친화적 사법 및 행정절차) ① 국가는 아동이 당사자, 피해

자 또는 증인인 모든 사법적 절차 및 그에 준하는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아동친화적 조사·심리·재판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법적 절차 및 그에 준하는 행정 절차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, 의사를 결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절차 및 그에 준하는 행정 절차에서 아동이 직접 또는 전문적인 조력인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아동을 대면하는 담당 인력에 대하여 아동 권리 및 아동친화적 소통 방식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행한 처분·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기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 법 제11조

에 따라 수립된 아동정책기본계획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·시행하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이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·시행하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으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8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수립·시행하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립·시행하는 지역별 아동정책 계획으로 본다.

제4조(아동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18조에 따른 아동정책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.

제5조(아동종합실태조사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이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로 본다.

제6조(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이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아동정책영향평가로 본다.

제7조(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아

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.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7조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아동정책위원회에”로 한다.

③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”로 한다.

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

조”로 한다.

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9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제1항”을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제3항제2호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18조제3항제3호”로 한다.

⑥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”로 한다.

⑦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”로 한다.

⑧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단서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본법」 제23조”로 한다.

⑨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 제2항제17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”를 “「아동기
본법」 제23조”로 한다.